

수소 밸류체인별 규제 세부 현황

□ 저장·운송(튜브트레일러 제조 및 판매)

사업명	사업절차	관련 법령 및 규정 분류				
		① 건축물·시설	② 인·허가	③ 환경	④ 영업 및 활동	⑤ 기타
수소 튜브 트레일러 제작 및 판매	연구/시제품 제작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국내 제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(용기·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)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(용기등의 제조등록)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(용기등의 제조시설 기준 및 제조기술기준) - KGS AC 212 (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) 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 중 이음매 없는 용기(이하 "용기"라 한다)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에 적용 	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해외제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 2(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)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2(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·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)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(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) - KGS AC 212 (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) 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			

		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 중 이음매 없는 용기(이하 “용 기”라 한다) 제조의 시설·기 술·검사에 적용		
제작/수입 등록		<p>*국내 제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(용기 ·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)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(용기등의 제조등록)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(용기등의 제조시설 기준 및 제조기술기준) - KGS AC 212 (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) 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 중 이음매 없는 용기(이하 “용기”라 한다)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에 적용 		
		<p>*해외제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(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)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(외국용기등의 제조 등록 · 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)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(외국용기등 제조 등록의 면제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기간”이란 3년을 말한다.<개정 2013. 3. 23.> ③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다만, 외국의 제조시설 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, 별표 10의2 및 별표 12(압력용기, 저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)에서 정하는 시설 		

		<p>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.<개정 2013. 3. 23.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KGS AC 212 (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) 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 중 이음매 없는 용기(이하 "용기"라 한다)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에 적용 		
용품 인증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KGS AC 212 (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) - 설계단계검사 - 생산단계검사 		
판매 및 등록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(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) 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(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 범위 등) 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(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) 	
사용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0조 (공급자의 의무 등) 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20조 (사용신고 등) 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(공급자의 의무 등) 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(안전관리규정) 	
말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(사업 개시 등의 신고) 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(사업개시 등의 신고서) 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(허가·등록의 취소 등) 		
폐기				